

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

제정 2013.12.30.

개폐정리 2015. 6.30

일부개정 2022.06.22.

제1장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성폭력·성희롱·성매매 등 위법행위(이하 “성 관련 위법행위”라 한다)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 규정은 성 관련 위법행위 관련 징계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징계규정을 따른다.

제2조(징계 사유 및 요구) 사장은 임직원이 성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징계 의결요구서(별지서식 제1호)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제3조(징계 종류) 징계 종류는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·정직·감봉·견책·계고로 구분한다.

제4조(징계의 효력) 징계의 효력은 별표1에 의한다.

제5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이 규정에 의한 징계사건의 심의·의결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실시한다.

제6조(징계의결의 기한)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사건은 징계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

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,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 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제1항의 의결은 징계의결서(별지서식 제2호)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징계기준)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,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

제9조(징계의결 등의 통보) ① 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통고서(별지서식 제3호)에 징계의결서와 회의록(별지서식 제4호)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의 결정은 사장이 징계의결서를 확인결재함으로써 효력을

갖는다.

③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징계해당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서(별지서식 제5호)에 의해 징계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

④ 징계의결 통보시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,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① 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사장은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등 재심 요구서(별지서식 제6호)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
1. 재심사 청구의 취지
2.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
3. 징계 등 의결서 사본
4. 제8조에 따른 여러 정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사규관리규정 [별표] 사규분류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.

편별	분류	사규번호	사 규 명	소관부서
제4편	인사·복지	4-25	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	인사처

부 칙<2015. 6.30>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6.22>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제4조 관련)

징계의 효력

종 류	효 력
면 직	파면 ① 면직해당자로서 개전의 정이 농후하고 타기관에 근무하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원면직으로 할 수 있다.
정 직	①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출근을 정지한다. ②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준급의 80%를 감액 지급하고,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 정직기간과 그후 2년간의 승진 및 1년간의 승급을 각각 불허하며, 정직기간은 계속 근무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감 봉	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. ②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준급의 5%를 감액 지급한다. ③ 감봉기간과 그 후 1년 6개월간의 승진 및 6개월간의 승급을 각각 불허한다.
견 책	견책을 받은 직원은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1년간의 승진 및 6개월간의 승급을 각각 불허한다.
계 고	과거 1년 중 2회의 계고는 견책과 동일한 벌칙으로 본다.

[별표2] (제8조 관련)

징 계 기 준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,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	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
1. 성폭력범죄				
가.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 대상 성폭력범죄	면직	면직	면직~정직	정직~감봉
나.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	면직	면직	면직~정직	정직~감봉
다. 공연(公然)음란행위	면직	면직	정직	감봉
라.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	면직	면직	정직	감봉
마.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	면직	면직	정직	감봉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	면직	면직	정직	감봉~견책
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	면직	면직~정직	정직~감봉	견책~계고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	면직	면직~정직	정직~감봉	견책~계고
※ 비고 1. 제1호에서 “성폭력범죄”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. 2. 제1호나목에서 “업무상 위력 등”이란 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 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 한다. 3. 제1호라목에서 “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”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4. 제1호마목에서 “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”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			

[별지서식 제1호]<개폐정리 2015. 6.30>

징 계 의 결 요 구 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직 명		소 속	
			생년월일		재직기간	
	본 적					
	주 소					
징 계 사 유						
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						
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(인)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

[별지서식 제2호]

징 계 의 결 서

징계 혐의 인적사항 자	소 속	직 명	성 명
의 결 주 문			
이 유			
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(인) 위 원 (인) 위 원 (인) 위 원 (인) 위 원 (인) 위원겸간사 (인)			

[별지서식 제3호]

징 계 의 결 통 고 서

소 속		직 위	성 명
주 문			
이 유			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통고합니다. 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(인)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			

인사위원회 회의록

1. 개최일자
2. 장 소
3. 출 석 자
4. 심의안건

회의사항
(회의사항을 약기함)

20 년 월 일

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위원회

위원장	(인)
위 원	(인)
위 원	(인)
위 원	(인)
위 원	(인)
위원겸간사	(인)

[별지서식 제5호]

징 계 처 분 통 지 서

소 속		직 명		성 명	
주 문					
이 유					
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					
20 년 월 일					
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				(인)	
(피징계자)			귀하		

[별지서식 제6호]<개폐정리 2015. 6.30>

재심요구서

성명		직명		소속	
		생년월일			
주소					
의결주문					
재심요구이유					
위와 같이 징계의 재심의결을 요구함 20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(인)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